

#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68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8. 5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개정이유

- 『경기도 시·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』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 정립
-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및 『경기도 시·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』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종사자에 대한 교육 근거 마련
- 『경기도 시·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』에 따른 사전예약제 및 즉시콜제 병행운영 관련 근거 마련
- 『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개정에 따른 민간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(교통봉사단체)

## 주요내용

- 가.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업무대상 추가 (안 제9조)
- 나.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 일부 개정 (안 제10조)
- 다.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의 우선순위 설정 근거 신설 (안 제11조)
- 라. 특별교통수단 교육 기준 신설 (안 제13조)
- 마. 민간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 (안 제14조)

## 개정조례안 : 붙임1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## 입법예고 : 의견 없음

- 예고기간 : 2015. 5. 20. ~ 6. 10.

## 기타 참고사항 : 붙임4

- 현행조례
- 방침결정문

## ( 불임 1 )

#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1조**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1조(목적)**이 조례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4조제1항** 중 “시장”을 “안산시장(이하 ‘시장’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**제9조제1항**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특별교통수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

**제9조**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수탁자의 선정 및 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0조제2항**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확보하고,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10조제3항**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사전예약제 또는 즉시콜제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이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10조제4항**을 삭제한다.

**제10조**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경기, 서울, 인천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은 운행대수 및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.

## **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**

② 시장은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.

## **제12조 제2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6조 제1항과 법 시행규칙 제5조를 기준하여”를 “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”로 한다.**

## **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,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**제13조(특별교통수단 교육)**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신규 및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새로 채용된 종사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규교육을 받은 후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며, 다음 해부터는 매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**제14조(재정지원)** 시장은 교통봉사단체가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통학로 교통지도 및 교육활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교통정책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교통정책과장 신효승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교통정책계장 이병호
	담당자 성명·전화	권효중 (행정 2979)

( 불임 2 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안산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의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4조(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)</p> <p>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조(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)</p> <p>① 안산시장(이하 ‘시장’이라 한다)은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	<p>제9조(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특별교통수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수탁자의 선정 및 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0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시장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도입한다.</u></p> <p>③ <u>특별교통수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.</u></p> <p>1. 제10조제2항과 같이 운영한다.</p> <p>2. 예약제로 운행하며 장기이용도 가능하다.</p> <p>④ <u>제3항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⑤ ~ ⑧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	<p><b>제10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확보하고,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사전예약제 또는 즉시콜제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이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〈삭제〉</p> <p>〈삭제〉</p> <p>〈삭제〉</p> <p>⑤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<u>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경기, 서울, 인천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은 운행대수 및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
<p><b>제11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② <u>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<b>제11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.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③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수는 법 제16조제1항과 법 시행규칙 제5조를 기준하여 안산시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정한다.</p>	<p>제12조(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범위에서 ----- -----. -----.</p> <p>③ -----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----- -----.</p>
<p>〈신설〉</p>	<p>제13조(특별교통수단 교육)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신규 및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새로 채용된 종사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규교육을 받은 후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며, 다음 해부터는 매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</p>
<p>〈신설〉</p>	<p>제14조(재정지원) 시장은 교통봉사단체가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통학로 교통지도 및 교육활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
<p>제13조(예산의 확보) (생략)</p> <p>제14조(시행규칙) (생략)</p>	<p>제15조(예산의 확보) (현행 제13조와 같음)</p> <p>제16조(시행규칙) (현행 제14조와 같음)</p>